

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(전자적무역결제금융 거래용) 개정(안)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(전자적무역결제금융 거래용)</p> <p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본 인 (인) 주 소</p> <p>본인은 ~ (중간 기재생략)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.</p> <p>제 1조 (거래조건) 1~2로 번호 체하</p> <p>본인은, 본 특약에서 정의된 귀행의 ~ (중간 기재생략) 신청할 것이며,</p> <p>해당 금융 거래 시 수출상의 신용상태, 무역거래 자체 등에 대해서 은행은, 제13조에 정의된 지급보증 책임을 제외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,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약정서를 제출한다.</p> <p>제 2조 (용어의 정의)</p> <p>1. "전자적무역결제금융"이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2. "GuTT"이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3. "GPL"이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4. "Exporter" 라 함은,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5. "Importer지급확약조건부지급보증"이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	<p>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(전자적무역결제금융 거래용)</p> <p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(신설) 0000 년 00 월 00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본 인 (인) 주 소</p> <p>(내용 수정) 본인은 ~ (현행과 동일)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.</p> <p>제 1조 (거래조건)</p> <p>1. (내용 수정) 본인은 이 약정서에서 정의된 은행의 ~ (현행과 동일) 신청할 것입니다.</p> <p>2. (내용 수정) 본인은 해당 금융 거래 시 수출상의 신용상태, 무역거래 자체 등에 관하여 은행이 제13조에 정의된 지급보증 책임을 제외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.</p> <p>제 2조 (용어의 정의)</p> <p>1. (내용 수정) "전자적무역결제금융"이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2. (내용 수정) "GuTT"이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3. (내용 수정) "GPL"이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4. (내용 수정) "Exporter" 라 함은,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5. (내용 수정) "Importer지급확약조건부지급보증"이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	<p>금감원 약관변경 권고에 의거 개정함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6. "지급확약" 이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7. "확정지급보증"이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8. "지급확약액"이라 함은,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9. "지급확약기한 만료일"이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10. "GuTT"에 관하여 "만기일(maturity Date)"이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 상기 Exporter에게 ~ (중간 기재생략) 만기일이 된다.</p> <p>11. "GPL"에 관하여 관하여 "만기일(maturity Date)"이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12. "선입금"이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13. "금융이자"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14. "지급보증료"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15. "수수료"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16. "e-Invoice"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17. "전자적시스템"이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18. "Exporter의 대금수취계좌"라 함은,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19. "지급계좌"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 <p>20. "대지급금"이라 함은 ~ (중간 기재생략) 의미한다.</p>	<p>6. (내용 수정) "지급확약" 이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7. (내용 수정) "확정지급보증"이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8. (내용 수정) "지급확약액"이라 함은,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9. (내용 수정) "지급확약기한 만료일"이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10. (내용 수정) "GuTT"에 관하여 "만기일(maturity Date)"이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 상기 Exporter에게 ~ (현행과 동일) 만기일이 됩니다.</p> <p>11. "GPL"에 관하여 관하여 "만기일(maturity Date)"이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12. (내용 수정) "선입금"이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13. (내용 수정) "금융이자"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14. (내용 수정) "지급보증료"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15. (내용 수정) "수수료"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16. (내용 수정) "e-Invoice"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17. (내용 수정) "전자적시스템"이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18. (내용 수정) "Exporter의 대금수취계좌"라 함은,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19. (내용 수정) "지급계좌"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 <p>20. (내용 수정) "대지급금"이라 함은 ~ (현행과 동일) 의미합니다.</p>	
<p>제 3조 (Exporter 정보의 등록 및 관리) 본인은 ~ (중간 기재생략) 갱신한다.</p>	<p>제 3조 (Exporter 정보의 등록 및 관리) (내용 수정) 본인은 ~ (현행과 동일) 갱신하기로 합니다.</p>	
<p>제 4조 (거래 신청 및 취소)</p> <p>① 본인은, ~ (중간 기재생략) 입력하기로 한다.</p> <p>② '제1항' 의 신청내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.</p> <p>1. ~ 3 (기재생략)</p> <p>4. 금융이자의 ~ (중간 기재생략) 가능 하다)</p> <p>③ 본인이 신청했고 "은행"이 승인했던 특정 전자적무역결제금융 거래의 취소</p>	<p>제 4조 (거래 신청 및 취소)</p> <p>① (내용 수정) 본인은, ~ (현행과 동일) 입력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 (내용 수정) 제1항 의 신청내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.</p> <p>1. ~ 3 (현행과 동일)</p> <p>4. (내용 수정) 금융이자의 ~ (현행과 동일) 가능)</p> <p>③ (내용 수정) 본인이 신청하고 "은행"의 승인이 완료된 특정 전자적무역결제</p>	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는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.</p> <p>1. ~2. (기재생략)</p> <p>제 5조 (GuTT 거래에서의 지급확약 통지 의무)</p> <p>① 본인이 'GuTT' 거래를 신청한 경우, 상기 신청시 등록된 지급확약기한 만료일의 은행 영업시간(16:00시)까지, 본인은 전자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은행에 유효하게 '지급확약' 여부를 등록하여야 한다</p> <p>② '제1항'의 '지급확약'을 ~ (중간 기재생략) 등록한다.</p> <p>③ '제1항'의 기한내 본인이 은행에 지급확약여부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, 은행이 '지급확약 거절'로 해석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</p> <p>제 6조 (여신의 인정 시기)</p> <p>① GuTT 거래 중 '지급보증'의 경우 본인이 ~ (중간 기재생략) 보증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GuTT 거래 중 '선입금'의 경우 본인이 ~ (중간 기재생략) 대출일자로 한다.</p> <p>③ GPL 거래 경우 본인이 ~ (중간 기재생략) 대출일자로 한다</p> <p>제 7조 (개별여신의 만기산정)</p> <p>① "지급보증" 거래의 ~ (중간 기재생략) 설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"선입금(GPL포함)" 거래 시 ~ (중간 기재생략) 설정할 수 있다.</p> <p>제 8조 (수수료 부과)</p> <p>① 본인이 ~ (중간 기재생략) 인출한다.</p>	<p>금융 거래의 취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</p> <p>1. ~2. (기재생략)</p> <p>제 5조 (GuTT 거래에서의 지급확약 통지 의무)</p> <p>① (내용 수정) 'GuTT' 거래를 신청한 경우, 본인은 신청시 등록된 지급확약기한 만료일의 은행 영업시간(16:00시)까지 전자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은행에 유효하게 '지급확약' 여부를 등록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(내용 수정) 본인이 제1항의 '지급확약'을 ~ (중간 기재생략) 등록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(내용 수정) 본인이 제1항의 기한내 은행에 지급확약여부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, 은행은 '지급확약 거절'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제 6조 (내용 수정) (여신거래 등의 인정 시기)</p> <p>① (내용 수정) GuTT 거래 중 '지급보증'의 경우 본인이 ~ (중간 기재생략) 보증기간으로 합니다.</p> <p>② (내용 수정) GuTT 거래 중 '선입금'의 경우 본인이 ~ (중간 기재생략) 대출일자로 합니다.</p> <p>③ (내용 수정) GPL 거래 경우 본인이 ~ (중간 기재생략) 대출일자로 합니다</p> <p>제 7조 (개별여신의 만기산정)</p> <p>① (내용 수정) "지급보증" 거래의 ~ (중간 기재생략) 설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(내용 수정) "선입금(GPL포함)" 거래 시 ~ (중간 기재생략) 설정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8조 (수수료 부과)</p> <p>① (내용 수정) 본인이 ~ (중간 기재생략) 인출하기로 합니다.</p>	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㉔ 제6조 제2항의 ~ (중간 기재생략) 인출한다.</p> <p>제 9조 (지급보증료 납부)</p> <p>① 본인은 ~ (중간 기재생략) 납부한다. (이하 기재생략)</p> <p>② 지급보증료는 ~ (중간 기재생략) 납부한다.</p> <p>③ 제11조 제2항에 따라 Exporter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2항에 ~ (중간 기재생략) 납부한다</p> <p>④ 상기 제1항의 ~ (중간 기재생략) 납부한다</p> <p>⑤ 지급보증 거래가 상기 제4조 3항에 의거 취소된 경우에는 ~ (중간 기재생략) 환출한다. (이하 기재생략)</p> <p>제 10조 (금융이자 납부)</p> <p>① 제11조 제1항에 ~ (중간 기재생략) 경우에는 본인은 은행의 전자적무역결제금융 이용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이자를 납부한다. (이하 기재생략)</p> <p>㉔ 이자는 ~ (중간 기재생략) 납부 당일의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을 납부한다.</p> <p>③ 제11조 제2 따라 Exporter가 금융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1항에 의해 산출한 외화금액을 송금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한다</p> <p>제 11조 (지급보증료와 금융이자의 부담 주체에 따른 징수시기 및 요령)</p> <p>①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급보증료는 ~ (중간 기재생략) 상기 산출된 지급보증료를 은행이 본인의 지급계좌에서 인출한다. 2. 금융이자는 ~ (중간 기재생략) 상기 산출된 금융이자를 은행이 본인의 지급계좌에서 인출한다. 	<p>㉔ (내용 수정) 제6조 제2항의 ~ (중간 기재생략) 인출하기로 합니다.</p> <p>제 9조 (지급보증료 납부)</p> <p>① (내용 수정) 본인은 ~ (중간 기재생략) 납부하여야 합니다. (이하 기재생략)</p> <p>② (내용 수정) 지급보증료는 ~ (중간 기재생략) 납부합니다.</p> <p>③ (내용 수정) 제11조 제2항에 따라 Exporter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~ (중간 기재생략) 납부합니다.</p> <p>④ (내용 수정) 제1항의 ~ (중간 기재생략) 납부 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⑤ (내용 수정) 은행은 지급보증 거래가 제4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~ (중간 기재생략) 환출하여야 합니다. (이하 기재생략)</p> <p>제 10조 (금융이자 납부)</p> <p>① (내용 수정) 본인은 은행의 전자적무역결제금융 이용시 제11조 제1항에 ~ (중간 기재생략) 경우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이자를 납부하기로 합니다. (이하 기재생략)</p> <p>㉔ (내용 수정) 제1항의 이자는 ~ (중간 기재생략) 납부일 당일의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을 납부합니다.</p> <p>③ (내용 수정) 제11조 제2항에 따라 Exporter가 금융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산출한 외화금액을 송금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.</p> <p>제 11조 (지급보증료와 금융이자의 부담 주체에 따른 징수시기 및 요령)</p> <p>①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내용 수정) 지급보증료는 ~ (중간 기재생략) 은행은 상기 산출된 지급보증료를 본인의 지급계좌에서 인출합니다. 2. (내용 수정) 금융이자는 ~ (중간 기재생략) 은행은 상기 산출된 금융이자를 본인의 지급계좌에서 인출합니다. 	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㉔ Exporter가 부담하는 경우</p> <p>1. 지급보증료는 ~ (중간 기재생략) 상기 지급확약액에서 상기 산출된 지급보증료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한다.</p> <p>2. GuTT의 ~ (중간 기재생략) 상기 선입금 금액에서 상기 산출된 금융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Exporter앞 송금한다.</p> <p>제 12조 (만기 상환)</p> <p>㉑ 본인이 선입금을 신청한 경우 본인은 그 해당 만기일에 은행이 송금한 선입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.</p> <p>㉒ 본인이 지급보증을 신청한 경우 본인은 그 해당 만기일에 지급확약액을 결제하여야 한다.</p> <p>㉓ 본인이 GPL을 신청한 경우 본인은 그 해당 만기일에 외화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</p> <p>제 13조 (은행의 지급보증 책임)</p> <p>㉑ GuTT 거래에서 ~ (중간 기재생략) 송금한다. (이하 기재생략)</p> <p>㉒ 본인은 ~ (중간 기재생략) 상환한다.</p> <p>제 14조 (연체이자 적용 기준)</p> <p>본인은 ~ (중간 기재생략) 납부한다. (이하 기재생략)</p> <p>제 15조 (불가항력에 대한 은행 면책)</p> <p>본인은 전산장애, 소요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손실에 대하여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인정한다.</p>	<p>㉔ Exporter가 부담하는 경우</p> <p>1. (내용 수정) 지급보증료는 ~ (중간 기재생략) 은행은 상기 지급확약액에서 상기 산출된 지급보증료를 차감한 금액을 송금합니다.</p> <p>2. (내용 수정) GuTT의 ~ (중간 기재생략) 은행은 상기 선입금 금액에서 상기 산출된 금융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Exporter앞 송금합니다.</p> <p>제 12조 (만기 상환)</p> <p>㉑ (내용 수정) 본인은 본인이 선입금을 신청한 경우 그 해당 만기일에 은행이 송금한 선입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.</p> <p>㉒ (내용 수정) 본인은 본인이 지급보증을 신청한 경우 그 해당 만기일에 지급확약액을 결제하여야 합니다.</p> <p>㉓ (내용 수정) 본인은 본인이 GPL을 신청한 경우 그 해당 만기일에 외화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 13조 (은행의 지급보증 책임)</p> <p>㉑ (내용 수정) GuTT 거래에서 ~ (중간 기재생략) 송금합니다. (이하 기재생략)</p> <p>㉒ (내용 수정) 본인은 ~ (중간 기재생략) 상환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 14조 (연체이자 적용 기준)</p> <p>(내용 수정) 본인은 ~ (중간 기재생략) 납부하여야 합니다. (이하 기재생략)</p> <p>제 15조 (내용 수정) (책임 및 손해배상)</p> <p>(내용 수정)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환거래은행의 입금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서비스가 지연되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이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기로 합니다. 다만, 은행이 상기의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</p>	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 16조 (그 밖의 처리기준)</p> <p>① 은행은 ~ (중간 기재생략) 고지한다.</p> <p>②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외환거래기본약관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,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지급보증거래약정서(기업용), 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</p>	<p>제 16조 (그 밖의 처리기준)</p> <p>① (내용 수정) 은행은 ~ (중간 기재생략) 고지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② (내용 수정)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외환거래기본약관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,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지급보증거래약정서(기업용), 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.</p>	